

「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」 결 과 보 고 서



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
조 사 특 별 위 원 회

목 차

1. 조사 목적	2
2. 조사활동 개요	2
3. 조사특별위원회 구성	3
4. 조사방법	3
5. 조사활동 내역	4
6.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지원현황.....	5
7. 조사활동 결과	7
8. 조사결과 처리의견	11

※ 주요활동 사진 : 【별첨 1】

「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」 결 과 보 고 서

1

조사목적

- ☐ 지방자치법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OL복지재단 법인 산하 솔장애인 생활시설 (현재:다함께 하는길 장애인 생활시설)을 비롯한 구미시 보조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 실시
- ☐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 마련

2

조사활동 개요

- ☐ 조사발의 : 2014. 9. 1 /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
※ 2014. 8. 27 정하영 의원 외 7명 발의
- ☐ 조사기간 : 2014. 9. 1 ~ 2015. 10. 27
- ☐ 조사장소 :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실 등
- ☐ 조사대상
 - 가.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관련 부서
 - 나.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
- ☐ 조사 사무범위
 - 가.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
 - 나. 구미시 보조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

3

조사특별위원회 구성

구 분	성 명	소속 상임위원회	비 고
위 원 장	박 교 상	산업건설위원회	
부위원장	강 승 수	기획행정위원회	
위 원	김 복 자	“	
	김 상 조	산업건설위원회	
	김 재 상	“	
	김 정 곤	“	
	박 세 진	기획행정위원회	
	손 홍 섭	“	
	안 장 환	산업건설위원회	
	윤 종 호	“	
	정 하 영	기획행정위원회	
사무보조자	백 승 해	의회운영전문위원	인 사 이 동 '14.9.1~'15.7.5
	류 시 건	“	인 사 이 동 '15.7.6 ~현재
	이 경 호	행정 7급	인 사 이 동 '14.9.1~'15.1.26
	김 응 종	“	인 사 이 동 '15.1.27~현재
	변 재 석	행정 8급	인 사 이 동 '14.9.1~'15.1.26
	오 경 원	“	인 사 이 동 '15.1.27~현재
	이 미 옥	속 기 사	

4

조사방법

- ☐ 조사대상기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·답변
- ☐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·검토
- ☐ 관계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진술 청취 및 질의·답변
- ☐ 개별 및 소위원회별 현장 방문(관계공무원 동행)

5

조사활동 내역

기 간	차 수	활 동 내 용	비 고
'14. 9. 1	제1차 조사특별위원회	○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, 부위원장 선임	
'14. 9. 12	제2차 조사특별위원회	○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	
'14. 9. 16	제3차 조사특별위원회	○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	
'14. 9. 30	제4차 조사특별위원회	○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	
'14. 10. 6 ~10. 8	제5,6,7차 조사특별위원회	○서류검증 및 질의답변(관계공무원) • 주민생활지원국, 안전행정국 • 경제통상국, 정책기획실 • 건설도시국, 선산출장소, 농업기술센터, 구미보건소, 평생교육원	
'14. 10. 29 ~10. 31	현장방문	○현장방문 및 의견진술 청취 • 시 생활체육회, 무을면 양돈농가 • 금오산 감작목반, 구미예총 등	
'14. 11. 11	제8차 조사특별위원회	○조사특별위원회 조사중간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	
'14. 11. 13 ~11. 20	현장방문	○현장방문 및 의견진술 청취 • 시 체육회,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• 어린이집(2개소) •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등	
'14. 11. 21 ~ '15. 10. 19	현장조사	○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활동	
'15. 10. 20	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	○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협의 등	
'15. 10. 27	제9차 조사특별위원회	○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	

6

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지원현황

□ 사회복지시설 현황

(2014년 12월말 기준)

대상자별	형태	유형	시설종류	시설수
계				999
노인 (431)	생활	주거복지	양로시설	2
		의료복지	노인요양시설	17
			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	25
	이용	재가복지	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·목욕·간호, 주·야간, 단기보호)	8
		여가복지	노인복지관	1
			경로당	378
여성 (6)	생활	생활시설	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	1
			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	1
	이용	이용시설	건강가정 지원센터	1
			여성 새로일하기센터	1
			여성종합상담소(성·가정폭력상담소)	1
			영남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	1
아동 (51)	생활	생활시설	아동양육시설	1
			공동생활가정	2
	이용	이용시설	지역아동센터	48
장애인 (13)	생활	생활시설	중증장애인 요양시설	1
			장애인 단기 보호시설	1
			장애인 공동 생활가정	2
	이용	지역사회 재활시설	장애인 복지관	1
			장애인 체육관	1
			장애인 주간보호시설	3
			장애인 심부름센터	1
			수화통역센터	2
			직업재활시설	1
영유아 (498)	이용	어린이집	국공립	8
			법인	16
			직장	10
			민간	216
			가정	248

□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총괄 현황

(2013년도)

분 야 별	건 수	예산액(천원)			
		계	국 비	도 비	시 비
계	726	40,932,541	12,111,885	12,930,155	15,890,501
노 인	72	6,605,803	1,781,204	1,253,764	3,570,835
여 성	26	1,839,270	1,191,289	154,704	493,277
장 애 인	61	9,932,153	3,195,605	1,754,786	4,981,762
아동보육	516	20,015,965	4,705,312	9,376,638	5,934,015
지역아동센터	51	2,539,350	1,238,475	390,263	910,612

□ 구미시 보조금 총괄 현황

(2013년도)

목 별	건 수	예산액(천원)			
		계	국 비	도 비	시 비
계	1,735	164,624,127	32,005,721	21,453,289	111,165,117
일반보상금 -민간인 국외여비	12	190,901	-	7,198	183,703
민간경상보조금	195	7,863,025	1,820,742	1,259,574	4,782,709
사회단체보조금	30	525,756	-	-	525,756
민간행사보조금	129	2,839,620	4,000	559,900	2,275,720
민간위탁금	386	83,344,357	9,927,010	4,553,850	68,863,497
사회복지보조	595	23,419,416	6,109,182	9,744,013	7,566,221
민간자본보조	360	45,578,674	14,132,575	5,295,090	26,151,009
일반운영비 -홍보관련경비	7	390,800	-	-	390,800
일반운영비 -시 주관 행사 지출경비	21	471,578	12,212	33,664	425,702

□ 총 평

▶ 이번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

-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2014년 9월 1일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 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.
- 본 위원회는 박교상 위원을 위원장으로, 강승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조사계획서 작성,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제5,6,7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조사 활동에 들어갔으며, 2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조사업 정산서와 회계관련 서류를 검증하고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활동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음.
- 조사기간 중 15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, 10여 차례의 현장방문 등 내실 있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23건의 지적사항을 구미시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하기로 하였음.

□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

▶ 사회복지시설 분야는

-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행정 조직 확대개편 (복지시설 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)검토,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 지양,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전교육 정례화와 보조금 집행 후 관리 감독 철저,

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,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설 증대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음.

▶ 보조사업 지원 분야는

-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 철저, 허위보고·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와 익년도 페널티 확행 등 사후적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,
- 소규모·선심성 읍면동 단위 행사와 유사한 축제는 폐지하거나 통폐합 하여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 발굴, 각종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특정단체(인)가 독점할 수 없도록 공모제 적극 운영, 보조금 자부담 비율(20%이상)을 엄격히 적용, 각종 행사 시 참가비 또는 후원금을 정산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방안 강구,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제도 도입을 촉구 하였으며,
- 농축산업 분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목반 및 법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개인에게 부정 지급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요구, 특히 우리맛닭 보조사업(농업기술센터)과 금오산 감 작목반 보조사업(농정과)에 대해서는 구미시 자체 감사를 요구하며, 축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 방안 검토, 각종 농가지원 사업의 보조금 실제 집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·감독 철저, 유사·중복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선산 출장소의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요구하였으며,
- 특히,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중 보조금 지급대상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(각 부서별 지원 조례 포함)을 통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·명문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.

□ 조사 기간 중 주요 성과로는

- 보조금 관리조례 전면 개정(2015.4.9/ 제195회 임시회 시 의결)
 - ☞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,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조례 전면 개정
- 사회복지분야 행정조직 확대 개편(2015.7.21/ 제197회 정례회 시 의결)
 - ☞ 가족지원과 신설로 사회복지 업무분야 조직을 3개 과로 확대 개편하여 효율적인 복지업무 추진 가능(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)
- 사회복지시설·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시 자체점검 실시
 - ☞ 27개소/ 4개반 21명 점검반 구성/ 96건 지적사항 조치
- 소규모 읍면동 단위 행사 축소·폐지
 - ☞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읍면동 단위행사 예산 미반영 요구 조치 (11개 읍면동/ 222.7백만원)
- 유사 축제 통합하여 구미시민 한마음대축제 개최 계기 마련
 - ☞ 11년 만에 축제 부활, 시민 역량 결집과 지역 발전 원동력 계기 마련
- 각종 사업에 대한 일몰제 엄격한 평가 실시
 - ☞ 2015년 사업대상 일몰제 평가 결과
 - 일몰대상 : 2개 사업(67백만원)/ 일부삭감 : 4개 사업(48백만원)
- 15년 본예산 심사 시 민간경상·민간행사사업 심도있는 심사·의결
 - ☞ 15년 본예산 심사 시 불요불급한 사업 56건/ 734백만원 삭감 조치
-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계기로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대적인 자체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으며, 관계공무원의 보조금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.

□ 향후 발전방안으로는

- 민간경상사업, 민간행사사업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
- 소모성, 선심성 예산 절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사업, 일자리 창출, SOC사업, 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의 예산 증대를 요구
- 부서별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및 시행지침 정비
 - 민간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(자부담 비율, 최소 및 최대지원 한도액 등) 마련, 유사 중복사업 지원제한 규정, 횡령 등 지원법령 위반자에 대한 사업배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 요구
-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
 -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One-Strike Out제 도입, 명단 공표 등 사후적 제재 강화
- 사업선정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
 - 보조금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
 - 보조사업 내역(사업자, 사업비 등)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
 - 일정금액 이상 보조금 지원 사업장과 취득건물·장비에는 시민들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“보조금 지원 표지판”(스티커)을 설치
- 사업추진체계 및 방향의 개선, 상시 모니터링제 도입
 - 구미시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와 사업은 단체에 위탁 추진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
 -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(예방적 감사) 운영으로 부정지원 사전예방
-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 및 정산(사후관리) 철저
 - 최적의 「민간보조금 관리 전산시스템」 구축·운영
 - 보조사업 회계 관계자 교육 강화 및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제공
 -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철저
 -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

□ 지적사항 총괄 견수

(조사특별위원회)

계	처 리 의 견		비 고
	시 정	개 선	
23	9	14	

□ 세부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(총무과)	개 선	1. 사회복지분야 행정조직 확대개편 검토 ○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복지민원 업무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제약이 많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. ○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재배치를 검토하여 주민생활 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조직 확대개편 방안 검토. ○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전담부서(담당) 신설 검토 ※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완료(가족지원과 신설) (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 /2015.7.21)
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(총무과)	시 정	2.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복지업무 추진방안 강구 ○ 사회복지업무 분야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잦은 인사이동 지양,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제공,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일관성 있는 복지업무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	시 정	3. 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·감독 철저 ○ 일부 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과 후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사례가 있음. ○ 보조금 지급과 지도 점검을 동일부서에서 실시함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어려운 실정임. ○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지도·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도 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지도점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○ 후원금 관리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원금 사용내역을 점검·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기 바람.
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(기획예산담당관실)	시 정	4. 복지시설 및 단체의 회계담당자 보조금 관련 사전 교육 정례화 ○ 민간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에는 별도로 정리되고 사안별 처리방법이 포함된 회계 지침서나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보조금 신청과 정산처리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○ 보조금 지원시설 및 단체 관계자가 회계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 관계법령과 예산집행 요령, 세부 항목별 지침 및 사례, 회계서류 작성서식, 항목별 첨부서류 등이 포함된 회계 지침서를 제작 배부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정례화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사회복지과	개 선	5. 장애인 인구에 걸맞은 시책 발굴 및 시설 증대 방안 강구 ○ 중증 장애인(1만4천여명) 수 대비 장애인 보호 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인구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시설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가족지원과	개 선	6. 지역아동센터 관리·감독 철저 ○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있어 관내 50여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1명의 담당자가 관리하여 시설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. ○ 구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간의 교차점검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정적 교류 체계를 확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.
전 부 서	시 정	7. 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철저 ○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 결과 목적 외 사용한 사례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○ 자부담 부분과 집행실적 검증, 정산서류 및 지출서류의 철저한 확인 검토, 현지조사 등 원칙과 법령에 적합한 실질적인 정산검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정산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람. ○ 아울러 향후 허위보고, 부당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수 조치 이행 및 익년도 페널티 적용 확행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전 부 서 (문화관광담당관실)	개 선	8. 소규모 읍면동 단위 행사와 유사한 축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, 구미를 대표하는 축제 발굴 ○ 2013년 기준 150여개의 축제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행사가 많음. 또한 특정 읍면동에서만 축제를 실시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. ○ 매년 반복되는 유사한 축제나 행사, 소규모 읍면동 단위 행사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구미를 대표할 수 있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추진하기 바람.
전 부 서 (기획예산담당관실)	시 정	9. 보조금 자부담 비율(20% 이상) 엄격히 적용 ○ 보조사업 및 각종 행사 시 실제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추진하는가 하면, 설사 자부담 규정이 있더라도 허위서류 첨부 등으로 정산 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. ○ 또한 동종의 사업에 있어 보조 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단체마다 상이하여 불합리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. ○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20% 이상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의 비용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기 바라며, 지원되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기 바람.
전 부 서 (기획예산담당관실)	개 선	10. 보조금 오집행으로 인한 사례 발생 시 공무원 변상규정 제정 검토 ○ 보조금 횡령, 부당집행 사례 발생 시 공무원의 책임 및 변상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전 부 서 (감사담당관실)	개 선	11. 보조사업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제도 도입 검토 ○ 민간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심사, 교부결정 과정 등 전 과정에 대해 감사부서 또는 관리자(과장 등)가 실시하는 예방적 일상감사제도(상시 모니터링 제도)를 도입하여 부적정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.
전 부 서	시 정	12.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공모제 적극 운영 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보조(위탁)사업 수행자 선정 시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. ○ 사업의 목적과 수혜자의 혜택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공모제를 적극 운영, 특정단체(인)가 독점하는 현상을 배제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전 부 서	개 선	13. 각종 행사 시 참가비 및 후원금도 정산서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강구 ○ 각종 보조금 지원 행사 시 참가비 및 후원금을 행사 주최 측이 자체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. ○ 향후 보조지원금과 별도로 행사 주최 측의 자체 수입금도 정산서에 포함하여 제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새마을과 문화관광담당관실	개 선	14. 유사사업 통폐합 방안 강구 ○ 백일장, 가요제, 국악제, 연극제, 음악제 등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을 주관 단체를 달리하여 시행하고 있어 효율성과 시민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 낭비요인이기도 함. ○ 특히, 구미국제음악제는 3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었으나 국내거주 외국인 음악가 초청, 시민의 호응도 저하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 바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 ○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문화관광담당관실	개 선	15. 법성사 석불좌상 주변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○ 구미 법성사 석불좌상 주변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한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건축행위가 목적이었으나, 건축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하였고, 사업 시행 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고 임의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임.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
새마을과	개 선	16. 구미시 새마을지회 보조사업 효율적인 추진 방안 강구 ○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여개로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타 부서와 중복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복 행사 등을 지양·축소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기획예산담당관실	개 선	17. 각종사업에 대한 일몰제 엄격한 적용 ○ 3년 이상 계속되는 보조사업에 실시되는 일몰제 운영·평가결과 실적이 전무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. ○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기 바라며, 대상 사업 중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 바람.
문화관광담당관실 총 무 과	개 선	18. 단체의 성격과 업무에 적절한 보조금 지원 방안검토 ○ 문화원, 예총, 민주평통 등 단체의 성격과 업무에 맞지 않는 보조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. ○ 해당 단체의 고유업무 중심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.
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	개 선	19. 축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 방안 검토 ○ 금오산 맥우 사업(보조금 881백만원), 구미한우협회 직판장(보조금 375백만원), 축협 한우프라자(보조금 296백만원)등 축산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이 축산업 장려 및 발전보다는 소규모 영세 영업자(지역 골목상권)를 고사시키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(총무과)	개선	20. 유사·중복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선산출장소 (농정과,유통축산과)와 농업기술센터 업무 조정 검토 ○ 여러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중복 추진함에 따라 수혜자가 중복 발생하고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음. ○ 유사·중복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.
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(감사담당관실)	시정	21. 보조금이 특정 개인에게 지원 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 방안 강구 및 시 자체 감사 요구 ○ 작목반 및 법인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특정 개인에게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. ○ 금오산 감 작목반 보조사업(보조금 240백만원)과 우리 맛답 보조사업(보조금 600백만원)은 특정 개인에게 지원되어 해당 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이 확인된 바 구미시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하니 부정사례 확인 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 바람. ○ 향후 이러한 사례 적발 시 보조금 회수, 보조금 지원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적 및 요구사항
선산출장소	시 정	22. 각종 농가지원사업 관리·감독 철저 ○ 선산출장소 과별 이중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업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. ○ 각종 농가지원사업은 수의계약과 입찰방식을 비교하여 예산절감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람. ○ 농기계 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시설·장비 지원 시 보조금 실제 집행여부를 현장 조사 확인하여 보조금 횡령 등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. ○ 아울러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
기획예산담당관실	시 정	23.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검토(지원대상 구체화) ○ 현재 조례상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이 일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보조사업 통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. ○ 보조금 지원 대상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(각 부서별 지원조례 포함)을 통해 구체화 하는 방안을 즉시 조치하여 주기 바람. ※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완료(지원대상 구체화) (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결/ 2015. 4. 9)

[별첨 1]

조사특별위원회 주요활동 사진대지



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
(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/ 14. 9. 1)



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
(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/ 14. 9. 1)



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
(조사계획서 작성/ 14. 9. 12)



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
(자료제출 요구의 건 / 14. 9. 16)



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
(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/ 14. 9. 30)



제5차~7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
(서류검증 및 관계 공무원 질의·답변 / 14. 10. 6 ~ 8)



제5차~7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
(서류검증 및 관계 공무원 질의·답변 / 14. 10. 6 ~ 8)



현장방문 및 의견청취
(구미시 생활체육회 / 14. 10. 29)



현장방문 및 의견청취
(양돈 농가 / 14. 10. 30)



현장방문 및 의견청취
(금오산 감 작목반 / 14. 10. 30)



현장방문 및 의견청취
(구미예총 / 14. 10. 31)



조사특위 활동사항 중간보고 및 논의
(전체의원 간담회 / 14. 11. 12)



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중간발표
(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/ 14. 11. 12)



조사특위 향후 추진방향 논의
(전체의원 간담회 / 14. 12. 17)



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
(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/ 15. 10. 27)